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 및 성주군 환경업무 전반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용어 정의 (안 제2조)
-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관계있는 “사업장폐기물”과 그 외의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로 구분함으로써 그 처리방법의 모호성을 해소

○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규정 (안 제4조 및 제4조의2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위탁운영에 있어, 그 절차 및 계약서 명시사항, 계약기간, 비용정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

○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규정 (안 제7조)
- 「폐기물 관리법」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배출방법 규정

○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방법 신설 (안 제11조의2)
-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신청 방법 규정

○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(안 제15조제1항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8.2.22. ~ 2018.3.14.)
○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 [주민복지과-16061(2018.3.14.)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폐기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행화 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우리군 폐기물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주요내용은, 조례에 사용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용어 정의와 폐기물 민간위탁업무 대행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 이 외에 생활폐기물의 마을단위 공동배출 지역 지정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개선,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한층 강화 하였습니다.

○ 다만,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었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수년전에 있었음에도 개정을 지체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특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,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